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9. 3.

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)



**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**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19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8. 24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8. 24.

## 2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으로 지역체육진흥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종전 임의로 둘 수 있었던 체육진흥협회 설치 의무화(안 제3조)
- 나. 체육진흥협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금천구청장과 금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함(안 제13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 및 제18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으로 지역체육진흥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함.

### 나. 주요 내용

- 종전 들 수 있었던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(안 제3조)
- 체육진흥협의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금천구청장과 금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(안 제4조)
-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함(안 제13조)

### 다. 검토결과

#### 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적법

-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조례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

임의적으로 둘 수 있었던 임의 조항에서 “둔다”는 강제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

## 2)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조례 개정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은 문제점이 없으나
-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안정적인 지원으로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

붙임 : 1. 관계법령 1부.

## 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1. 2. 19.] [법률 제17480호, 2020. 8. 18., 일부개정]

**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**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윤리센터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 <개정 2020. 2. 4., 2020. 12. 8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